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7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사 : 2002. 7. 23

다. 심 정 일 자 : 2002. 7. 23

(제105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,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농산과장 안 상 순

나. 제안사유

-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조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「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」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지함.

다. 주요내용

- 융자금 대출금리를 “4%”에서 “3%”로 함 (안 제7조)
- “도 농수산업진흥기금”을 “도 농어촌진흥기금”으로 함 (안 제7조)
- 융자금 회수할때를 “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한 때”를 추가함 (안 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2일 전라남도 조례 제2837호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융자금 지원 규정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4%에서 3%로 개정하고 융자금 회수 규정에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한때보 개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조례 개정에 따른 하사나 상위관련 법령의 지속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첨부 :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융자금”을 “융자금 지원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연4%” 를 “연 3%” 로하며, “도 농수산업진흥기금” 을 “도 농어촌진흥기금” 로한다.

제1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농어업에서 다업종으로 전업한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융자금) ① (생략)</p> <p>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4%로 하고, 연체이자율은 도 농수산업진흥기금 이자율에 준한다</p>	<p>제7조(융자금 지원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연3%----- ----- 도 농어촌진흥기금 -----</p>
<p>제11조(융자금의 회수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융자금의 회수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한 때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